

창원지방법원 2021. 10. 6 선고 2020가단666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2. 8. 25 선고 2021나64884 판결

창원지방법원 2021. 10. 6 선고 2020가단6668 판결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도움 담당변호사 이수경

2. 창원시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묵

변 론 종 결 2021. 7. 21.

판 결 선 고 2021. 10. 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 B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1984. 2. 14. 접수 제42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 창원시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C 지번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9. 3. 31. 접수 제234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기재 토지 중 D 토지에 관하여 1999. 3. 4.자 접수 제144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 관계

원고와 피고는, 아버지 망 E(1976년 사망, 이하 망인이라 한다)과 어머니 망 F(2013년 사망) 사이의 자녀들, 즉, 첫째 G(1946년생), 둘째 B(49년생), 셋째 H(개명전 이름 I, 51년생), 넷째 J(55년생), 그리고 다섯째 A(58년생) 이상 4남 1녀 중 원고는 다섯째, 피고는 둘째이다.

나. 소유권변동과정 등

(1)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은 원래 망인 소유 재산이었는데 사망이후 소유권이전변동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.

●2목록: 1984. 2. 14. 피고 B->1993. 7. 23. 소외 K-> 1999. 3. 4. 피고 창원시 ●1목록: 1984. 2. 14. 피고 B-> 1999. 3. 4. 피고 창원시

(2) 피고 창원시 이후

2009. 경 지적공부 폐쇄, 2 목록 (D) 은 L, 1 목록 (C) 는 M, N, L 로 각 구획 정리되고, 다시 N 토지는 군부대 이전부지로 편입 후 2019. 경 지적공부폐쇄로 창원시 의창구 O, P, Q, R 로 구획

정리되었다. 그 이후 현재까지 도로, 공원 등의 공공용지와 S 센터, 학교용지, 문화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다.

[다툼없는 사실, 을나제2~5호증(각 가지번호있는 것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원고 주장요지

이 사건 부동산들은 망인이 원고 상속지분으로 남겨둔 현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데도 피고 B가 망인의 사망이후 등기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고,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하자가 승계되었으므로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3. 판단

가. 먼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들은 모두 1984. 2. 14. 경 시행되던 구 부동산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(법률제 3094 호, 실효,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)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,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·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데, 원고 주장처럼 피고 B가 관련 등기원인 문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1 호증의 1, 2, 갑 5 호증의 1, 2, 3, 갑 16 호증만으로는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, 오히려 피고 B가 각 이전등기할 당시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등기관리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반대사정이 엿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.

따라서 같은 취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.

나. 다음 원고의 주장을 유류분침해를 원인으로 한 청구권의 행사로 선행하여 살피건대, 위 인용증거들에 을가 1, 2, 3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순차로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한 이후 2 목록의 경우 당시 생존하였던 어머니 F로부터의 사전승낙으로 피고 B의 부족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, 1 목록의 경우는 1999년 수용당시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상금 3억 442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양도소득세 약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

억 400 만 원을 어머니 F 과 4 형제가 동시 혹은 이시로 나누어 배분완료한 사실 , 다만 당시 딸인 원고가 배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, 유류분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 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,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 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데 ,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인정 등에 비추어 본다면 , 원고의 위 권리는 이미 상속개시일인 1976 년으로부터 기산하고 ,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4 년을 기산점으로 하더라도 모두 10 년 이상이 도과된 상태로서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부분도 이유 없다 .

4. 결 론

그렇다면 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.

판사 예지희